

장병 인터넷 이용 관련 법규

□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0조

□ 인터넷상 타인비방

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□ 군사보안업무훈령

□ 제 153조 ‘ 인터넷 운용’

① 장병 개인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는 공개되지 않은 군사자료(비밀 또는 일반자료)를 게시할 수 없다.

※ 처벌규정

- 군사보안업무훈령 별표 “5” 보안사고(위반)자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
 - 대외비 또는 비공개 군사자료 임의 게시, 전송시 : 경징계
 - 외부 전산망에 군사자료를 임의 게시, 전송시 : 경 고

□ 군인복무규율

□ 제 16조 2항 ‘ 불온표현물 소지· 전파 등 금지’

군인은 불온표현물·도서·도화 기타 표현들을 제작·복사·소지·운반·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- ☞ 모든 군인은 병영생활 중 불온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되며, 사회의 불건전하고 불온한 풍조가 군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.

□ 제 18조 ‘ 정치적 행위의 제한’

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

☞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서명하는 행위, 정치헌금의 기부, 정치적 구호나 상징물을 패용하거나 부착하는 행위, 정치적 의견을 공포하는 행위,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.

□ 제 25조 ‘ 고충처리’

④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‘군인사법’, ‘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, ‘국가인권위원회법’,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.

☞ 군인은 개인적인 애로사항과 복무상의 불만사항 등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시 대외투서, 진정행위, 집단 서명행위 등을 할 수 있으며,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로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.

□ 제 37조 ‘ 통신보안’

군인은 부대의 소재·부대이동·편성 및 군 인사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※ 군인복무규율 위반시 징계처리